

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

"국산목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「목재이용법」에 따라
공공기관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
☆우선구매하도록 만든 제도"

국산목재 이용 활성화
함께해요!



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란?

점의

국산목재 우선구매는 「목재이용법」 제19조제2항에 의거하여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.

- ☑ 「목재이용법」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·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미만(물품·용역 8천만원, 공사 88억원 미만)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 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**법정구매비율(50%) 이상 우선구매** 하여야 함

*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: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가공된 국산목재제품

대상

국산목재 확인제도로 인정받은 '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'

- ☑ “국산목재 확인제도”란 원목 생산부터 제품가공, 구매까지 이력을 확인하여 국산목재(제품)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

* 공공부문에 국산목재(제품) 납품하려는 자는 “국산목재(제품) 확인서” 발급 필수!

**** 목재정보서비스 한木꾸러미,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한木 표출 제품으로 확인 가능!**



탄소저장량 표시제도

국내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해 공식 리벨을 부착해 알리는 제도

‘국산소재 확인서’

[illegible]

산림청장